

## 【 4 】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

제출연월일 2007. 8. .

제 출 자 양 주 시 장

### □ 제안이유

- 양주시와 국내·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양 도시간의 내실 있는 인적·물적 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#### 가. 상호우호 협력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 규정 (안 제4조)

시장은 양주시와 국내·외 도시간의 행정·사회·문화·관광·체육·경제·교육·기타의 교류 등 상호우호 협력증진을 위하여 국내·외 도시와 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

#### 나. 자매결연도시 선정여건 및 결연숫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
국내·외 도시는 양주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.

#### 다.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검토사항 규정(안 제6조)

시장은 국내·외 도시로부터 결연제의를 받거나 양주시가 타 도시와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도시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·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함

**라. 자매결연 체결 전 사전교류 실시 규정(안 제7조)**

자매결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대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
**마. 결연식 체결과 서명에 관한 규정(안 제9조)**

도시간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, 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함(안 제9조).

**바. 읍면동의 국내도시와의 자매결연 시 준용규정(안 제12조)**

읍면동과 타 국내도시와의 자매결연도 본 조례를 준용하되 교류 대상지역은 “읍·면·동 단위의 행정구역”으로 하고 자매결연 체결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양주시 조례 제 호

## 양주시 국내·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양주시와 국내·외 도시(이하 “도시”라 한다)간의 자매결연(이하 “결연”이라 한다)등 국내 및 국제교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국내·외의 교류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국내도시”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·구를 말한다.
2. “국외도시”라 함은 우리나라의 시·군·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과 동일한 외국의 지역을 말한다.

제4조(결연) 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양 도시간의 행정·사회·문화·관광·체육·경제·교육·기타의 교류 등 상호우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국내·외 도시와 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5조(결연원칙) 제4조의 결연대상 도시는 양주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 (사전검토)①시장은 타 도시로부터 결연제의를 받거나 양주시가 타 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·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1. 면적, 인구 및 행정·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
2. 산업,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
3.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
4.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
5. 역사적,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
6. 기타 외교적 특수성

제7조(사전교류) 시장은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.

제8조(의견수렴 및 동의) 결연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국내·외 도시와의 결연은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9조(결연절차 등) 결연은 양 도시간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, 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.

제10조(사후관리) ①시장은 결연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자매결연 체결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.

③결연체결 후 양 도시간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

있다.(단, 국내도시간의 결연 취소 경우는 의회 동의를 생략할수 있다.)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2조(준용규정) 읍면동과 타 국내도시와의 자매결연은 본 조례를 준용하되, 교류대상지역은 “읍·면·동 단위의 행정구역” 으로 하고 자매결연 체결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입 안 자	실·과 장 직위·성명	총 무 과 장 이 진 규
	담 당 직위·성명	서무통계담당 전 태 언
	담 당 자 직위·성명	문 은 경 (행정 2162)